

심사보고서

2025. 5. 22.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0. 이완채(자곡로 260) 등 1192명

나. 상정의결

-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5. 5. 22.)
“ 채택 - 의견서첨부 ”

2. 청원 이유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지역 우회 노선안이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직선형 노선안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절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서 실질적인 의견제출 및 참여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청원을 제출하고자 함.

3. 소개 의견 요지(소개의원 : 김광심)

- 청원인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이미 복수의 철도 노선(SRT, GTX-A)이 지나고 있어 현 계획안과

같이 추진될 경우 구조적 안정성 저하, 지반 침하, 소음·진동 문제 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유사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세곡2지구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 이 청원을 소개함.

4. 관련 사업 및 추진 경과

- 사업 명칭: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 재원 조달: 국고 100%(재정사업), 총사업비 1조 1,103억원(2025년 기준)
- 시점별 추진 경과

시점	주체	내용
○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수서~용문 L=44.1km)
○ 2016년 6월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수서~광주 L=19.2km)
○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B/C=1.24, AHP=0.695)
○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17호) ※ 주민공람: 2020.12.31.~2020.01.28., 20일간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수서동·세곡동 주민센터)
○ 2021년 1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강남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강남구-송파구 통합 주민설명회 (2021.01.11(월) 10:00, 더퍼스트클래스파티 송파문정점) (코로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주간, 강남구민 0명 참여) (관련 공동주택에 안내 공문 송부, 강남구 교통행정과-426) - 수신인1: 래미안포레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수신인2: 강남현양수자리아파트관리사무소장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수서~광주 L=14.3km)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타당성심사과-880)

시점	주체	내용
○ 2023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작성 완료
2023년 2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2호)
○ 2024년 2월	국가철도공단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실시설계 착수(DL이앤씨)
2024년 6월	강남구청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협의 회신→국가철도공단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제2·3공구 기본설계(안) 공람 (성남시 공고 제2024-2041호) ※ 주민공람: 2024.8.6.-2024.9.4., 21일간 (강남구청 환경과·혁신전략과, 수서동·세곡동 주민센터)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제2·3공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강남구-송파구 통합 주민설명회 (2024.08.13.(화) 14:00,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강남구청(환경과·혁신전략과),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참석) ※강남한양수자인 입대위 민원→ 사유지 통과 반대 및 우회 요구
2024년 8월	강남구청	민원 전달 공문 송부 → 국가철도공단
2024년 9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24년 10월	강남구청	수서광주선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 검토의견 회신 → 국가철도공단
2024년 11월	국가철도공단	제2·3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참석 안내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165호)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¹⁾ (2024.12.12.(목) 19:00, 빌라드지디 수서) (강남구청(환경과·혁신전략과),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참석)
2024년 12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 부구청장 면담
○ 2025년 2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 구청장 면담
2025년 3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4자 면담(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청)
2025년 5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의회에 청원 제출

1) https://www.gangnam.go.kr/center/board/B_000282/1100300/view.do?office=3220065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축사업

- 청원과 직결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국고 100% 재정사업임.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발 일반철도 노선이 등장하여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수서광주선으로 통칭됨.
- 이후 2019년 7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B/C 1.24, AHP 0.695)를 통과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2019)와 기본계획(2020) 간 노선안 차이



- [A] 예비타당성조사(2019)에 따르면 시점부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수서차량기지 하부를 지나 세곡2지구 주거지역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동북쪽 모서리를 지나며 우회하고, 탄천 생태경관보존지역을 지나 성남시 수질복원센터를 통과하는 우회선형²⁾이 제시됨.
- [B] 기본계획(2020)에서는 시점부가 탄천을 지나지 않고 직선화되어 곧바로 강남

2)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 7.,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A]안

한양수자인아파트와 래미안포레아파트 한가운데 완충지대 하부를 관통하는 직선형³⁾으로 변경됨.

- 실제 거주 중인 주민 입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2019)와 기본계획(2020) 간 노선안 차이가 경미한 변경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노선안 차이는 다음 도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함.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 관련 공동주택: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래미안포레아파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중 강남구 의견(202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그 시점이 예비타당성조사(2019)와 기본계획 수립(2020)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때 수서광주선이 탄천 생태경관보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남구 의견이 포함되었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질의 및 회신⁴⁾

강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통과노선 북동측으로 약 0.43km 이격하여 탄천 도심속의 철새도래지(생태경관 보전지역, 철새도래지 지정)가 존재하므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항목에서 노선중심 반경 0.5km로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3) 한국개발연구원(KDI), 2023. 1.,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B]안

4) 국토교통부, 2020.3., <수서~광주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국토교통부, 2022.4.,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 의견은 노선이 탄천을 지나지 않도록 평가지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노선 직선화에 대한 찬성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강남지역 주민설명회 개최(2021.1.11.)

-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 건설사업 개발기본계획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SEA)를 받아야 하며, 초안을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⁵⁾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강남지역 주민설명회는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으나, 해당일은 코로나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를 2주간(2021.1.4.~1.17.) 시행한 기간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는 관련 공고에 단서를 달아두었음.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설명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개최하며, 이에 따라 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	---

-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강남구민이 0명이었기 때문에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세곡2지구 주거지역에 위치한 △래미안포레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여 공문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2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하였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적사항(2021.12.)

-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서~광주선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과 2023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 완료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2호)
- 한국개발연구원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라 시점부가 직선화 노선으로 변경 되면 세곡2지구 하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기술하였음.

기본계획 주요특징6)

한국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곡2지구 일부 저축(하부통과, 20m)에 따른 민원 발생예상
---------	--

- 특히 해당 기본계획은 세곡2지구 수서광주선과 SRT구조물 이격거리가 10m 미만이 되는 근접통과 구간이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6) 한국개발연구원(KDI), 2023. 1.,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계획 적정성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서~광주 터널과 SRT구조물 이격거리 검토 결과, SRT 개착BOX와 7.535m, SRT 개착BOX와 7.535m, SRT 터널 기재강과 5.266m 근접 통과하는 것으로 검토됨. 추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SRT구조물 안정성 확보와 근접시공에 따른 보강 및 시공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제2·3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2024.8.)

- 국가철도공단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홈페이지 게시하였고, 2021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합해 개최하였음. (성남시 공고 제 2024-2041호)
- 청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기존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당시 △노선이 아파트 직하부를 통과하는지, △노선 터널과 아파트 구조물 간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임.
- 설명회 이후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침범 거리를 알려달라고 공단 측에 문의하였고, 공단은 주민공람 기간(주민공람 2024.8.6~2024.9.4., 21일간)이 끝난 후에 회신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제서야 실제 최소 이격거리가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함.

○ 정부 설명과 비대위 주장 간 이견 차이(2024~2025)

- 2024년 9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대위가 제기한 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주민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음.
 - 공단 측 회신이 너무 늦어지는 등 정부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진행이 계속되어,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음.
 - 아파트 간 완충지대에는 이미 2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한데 노선이 추가되면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

- 신규 노선이 완충지대 경계 아파트 부지 하부로 통과하면 곧 ‘아파트 부지 하부 통과’ 로 이해되고 사유지 침범에 해당함.
 - 설명회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던 노선 터널과 아파트 구조물 간 최소 이격거리 (기준점: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417동 건물)는 0.5m로 확인됨.
 - 노선 통과 심도는 지하 18~20m 밖에 안된다고 보이므로 정밀안전진단, 자동화계 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실시설계에 대하여 공개 진행 바람.
 -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통과 노선안으로 변경해주기 바람.
-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측 설명은 다음과 같음.
- 노선 선형은 아파트 중심부는 아니고 부지를 조금 침범하는 수준이고 평면상으로는 ‘강남아파트 직하부 통과 배제’ 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사유지 침범에 대한 보상은 사업실시계획 고시 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별로 보상을 협의 할 예정임.
 - 설명회 자료의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이격거리 8m’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요청과 각 동별 이격거리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공단 측 회신이 늦기는 했지만 측정 기준점을 달리 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조물 외측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18~30m임.
 - 실시설계 적격자(DL이앤씨)에 따르면 안전성 검토 결과 최대침하량 등 지표가 허용치 이내이고 노선 통과 심도는 25~35m 예상되며, 안전문제 발생시 관련 법률상 절차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음.
 - 주거지 진동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가의 발파 공법보다 몇배 이상 공사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진동 기계화 굴착공법(Super Wedge)을 적용하여 착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전문기관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과 시공에 대한 계측 실시를 통하여 아파트 구조물 안전을 상시 확인하겠음.
- 양측의 이견 차이는 2024년 12월 주민 대상 공청회, 2025년 3월 4자 면담에 이르기까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2025년 5월 비대위 측에서 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음.

○ 구의회 청원 제기(2025)

- 비대위 측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에 이르는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면담 및 강남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4자 면담(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강남구청)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정부 측과의 합의점을 도저히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으며, 2025년 4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실종자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사고 및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함.
- 신안산선의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지하 30m에 위치한 상부터널을 지나고, 월곶판교선은 지하 50m에 위치한 하부터널을 지나는데, 이번 사고 발생 후 계측기 여러 대를 설치하여 인근 노선인 월곶판교선과 KTX고속선 등을 점검했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그러나 상부터널과 하부터널 모두 시행사는 민간사업자인데, △사업시행사인 민간사업자가 현장안전 문제를 어디까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지, △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설득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함.
-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같은 선례로 미루어 볼 때, 중대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 선형을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계 법령 및 계획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집행부 의견(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 탄천 하부 통과 노선으로 변경 요청 사항

-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노선 변경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음
- 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노선 선정 과정에서 강남구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강남구와 협의한 사항은 없음.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탄천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에서 사업비 증가와 분당선과의 경합,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모란역 인근 YM프라젠 아파트 건물 직하부 통과 배제 및 경강선 접속부 지장물 저축 최소화 등의 사유로 현재 노선으로 변경되었음
- 주민들이 요청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침범하지 않고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4자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사항

- 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추천은 환경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였으며, 해당 부서의 회신을 첨부함

<환경과>

- 환경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 시작 지점인 수서동에서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 추천하였음

<교통행정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021.12.31~2021.1.28) 및 주민설명회(2021.1.11) 개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공람 장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협조 요청에 대해 공람은 관련부서(교통행정과) 및 해당 주민센터(수서동, 세곡동)에서 진행하였고, 주민설명회는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공공시설 대관 등 장소협조가 어려움’의 사유로 인근 송파구 문정동 소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송파문정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고하여 진행됨

- 주민설명회 개최 시 강남구 교통개선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참석 주민은 없었으며, 강남구에서 별도 의견을 제출한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개략적인 노선도만 공개되어 아파트 부지 침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강남구는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와 래미안포레 아파트 측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등에 대해 안내하였음. 주민의견 제출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공고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직접 제출(팩스, 전자우편, 우편으로 서면 제출)하도록 안내함

○ 예비타당성 노선 변경 협의 사항

-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탄천 하부 통과)에서 현재 노선(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 침범)으로 변경 시 강남구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강남구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변경을 결정하였음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채택-의견서 첨부”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의견서

【경제도시위원회】

- 청원명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강남구청장
- 채택의견
 - SRT와 GTX-A 등 복수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에 대해 안전성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임
 - 2019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선정되었던 수서-모란-광주 노선이 주거 밀집 지역을 회피하는 노선으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강남구도 검토한 노선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강남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해화 되었고, 주민의견 전달과 관련 기관 협의의 직무가 유기된 문제가 있었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결정 과정 및 절차 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청원인들은 강남구 자체감사와 제2공구 노선변경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2공구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처리할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2025. 5. 22.

청 원 요 지 서

접 수 번 호		접수년월일	2025년 5월 20일
청 원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260 417동 801호(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성 명	이 완 채	
소개의원	김 광 심	소속 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건 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달달에 관한 청원		
소관 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요 지

- 청원인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강남구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현 기본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 재검토를 요청함.
- 세곡2 지구는 이미 SRT 및 GTX-A 노선이 지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복선전철까지 추가될 경우 지반 침하, 소음·진동, 구조물 균열 등 주거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일상생활과 건강권 침해, 환경질 저하 등의 복합적인 피해가 우려됨.
- 청원인은 2019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선정되었던 수서-모란-광주 노선이 주거 밀집 지역을 회피하는 노선이자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강남구도 검토한 노선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인 세곡2지구 주민이 아닌 수서동 주민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하였음.
- 2025년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 사고는 동일한 지하 구조물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세곡2지구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청원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를 우회하거나 대체 노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성과 정주 여건을 우선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면역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260 417동 801호(강남한양수자리아파트)	
	성명	이완채 (인)	생년월일 1971년 6월 5일
소개의원	김광심 (인)		
소개년월일	2025년 5월 20일		

소개 의견

- 본 청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는 현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생활환경 훼손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 청원인은 해당 지역이 이미 SRT와 GTX-A 등 복수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여기에 추가 노선이 더해질 경우 구조적 안정성 저하와 지반 침하, 소음·진동 등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한층 심화시켰으며, 세곡2지구 주민들 또한 유사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공감하며, 해당 청원이 관계기관에 성실히 전달되어 주민과의 소통 속에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청 원 서

○ 청 원 건 명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면역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관련 부처, 강남구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주거밀집 지역을 회피하고 최적격 노선으로 수서~모란~광주 노선으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재정성 검토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과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를 통과 노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안산선 지하터널과 같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지하터널 붕괴가 우려되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함.

2025년 5월 20일

위 청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자곡로260 417동 801호(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성 명: 이 완 채 (인) 등 1192명

연 락 처: 010-8830-7152

소개의원: 김 광 심 (인)

첨부 : 연서자 명부 1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변경 관련 참고자료 1부

[참고 자료]

청 원 서

제 목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

1. 개 요

2015.1월부터 2019년7월까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 관련부처, 강남구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주거밀집 지역을 회피하고 최적격 노선으로 수서-모란-광주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재적정성 검토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과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를 통과 노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같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지하터널 붕괴가 우려되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수서-광주 복선전철 철도사업 추진 경과

- 2015.01~ 2019.07 : 예비타당성 조사 및 통과
- 2020.03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2020.12 ~ 2021.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1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절차 생략 협의완료
- 2024.08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2025.02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환경부)
- 2025.05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예정

- 2024. 09. 13 : 강남한양수자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3. 강남한양 수자인 아파트로 부당하게 노선 변경한 사유

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유

- 1) 강남구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원으로 관련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서동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강남한양수자인 주민의견을 반영 못하였습니다.
- 2) 강남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기간 중 2021. 01.11~01.12 까지** 주민의견 수렴 공고와 공람을 하였으나 단 한명도 참여를 못한 것을 강남구가 알면서도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대책이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 3)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성남시, 송파구 등 지자체장, 의회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남구, 강남구의회 의견을 내지않고 누락시켰습니다.

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수서(탄천)-모란-광주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

- 1) 2019년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는 수서(탄천)-모란-광주노선이 주거지역을 우회한 노선이고, 예비타당성부터, 강남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선정한 노선이다.

○ 대안별 노선 분석 (첨부“1”. 107페이지)

● 검토안 : 탄천-성남수질 복원센터

장 점 : 기존 노선활용 노선으로 연장 최소화

● 대 안 : 탄천-성남수질 복원센터

장 점 : 사업계획서 대비노선연장 최소화(사업비 절감)

지하철 8호선 횡단 배제

★ 특 징 : 당시에 세곡2지구 통과 노선 검토 없음

○ 사업노선 검토 (첨부“2”. 108페이지)

● 검토안 : 사업계획에 제시된 노선.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견을 수렴한 노선으로

열차운행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다.

● 대 안 : KDI 연구진이 제시한 노선으로 대단위 주택밀집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이다.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KDI연구진도 탄천노선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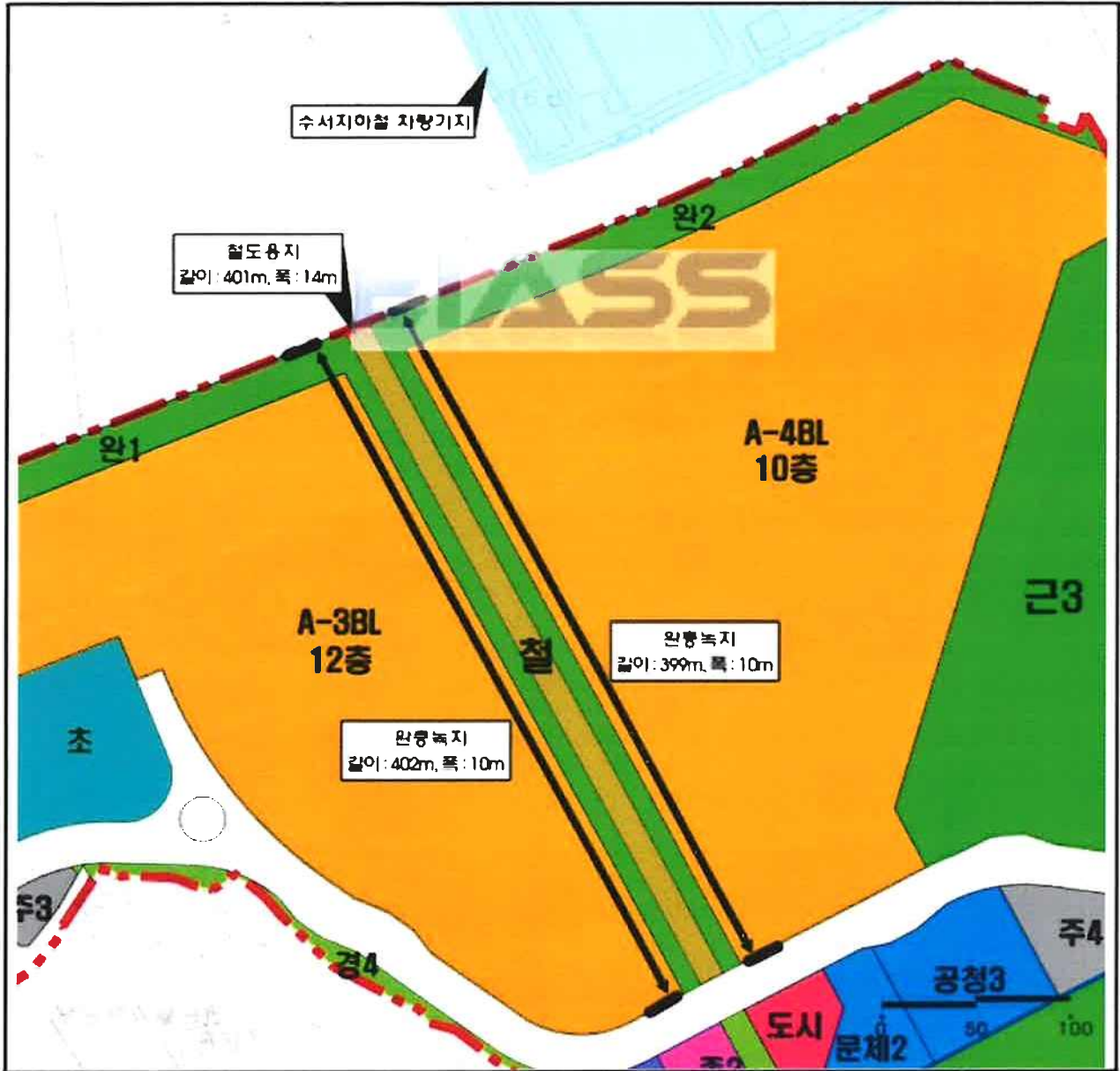
2) 서울 세곡2 공공주택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통보서

【(2020년도 운영시 제 3차년도 조사결과(최종) 020. 11】에서

아래와 같이 완충지대 10m를 설치하여 분양계획서에 명시하였다.

<표 7.5.2-37> 철도용지 및 완충녹지 제원

구분	위치	폭(m)	길이(m)	계획고(m)
철도용지	남측지구	14	401	13.62
완충녹지	고속철도구간 양측	10	402, 399	2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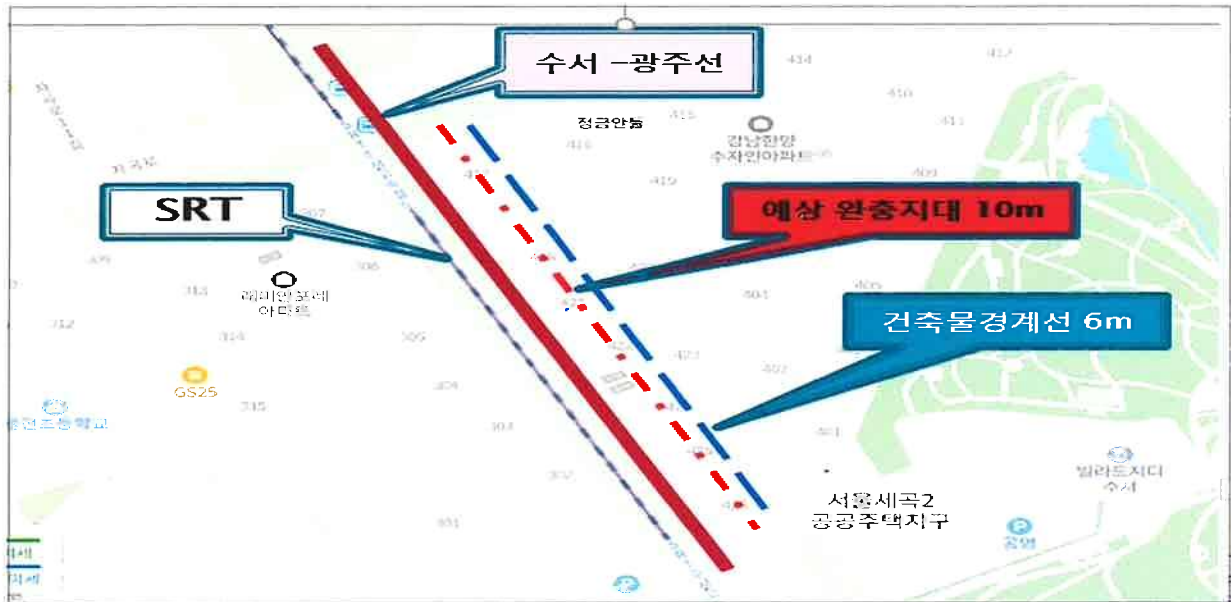
(그림 7.5.2-8) 철도용지 인근 녹지조성 계획

가) 협의 내용

협 의 내 용	이 행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철도)의 확보 유지에 비중을 두어 충분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공사 시행과정에서도 위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등을 최대한 반영. 이행토록하여야 함.(115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의 경우 지하로 통과하고 있으며 저감 방안으로 철도부지 경계로 부터 완충녹지 10m를 설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의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 할 때는 ~생략~ 저감방안 등을 수요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알고 분양 계약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16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의 경우 지하로 통과하고 있음. ● 철도소음으로 인한 저감방안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완충녹지 (10m)를 확보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1. 사업승인 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함)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136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내용을 사업자에 통보하였으며 , 사업자가 협의 내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 (1)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남구청장은 완충지대 10m를 훼손하거나 지하터널 허가 시(협의 포함)에는 사기분양이고 직권남용이다.
- (2)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SH서울주택도시공사장. 강남구청장은 즉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수서~광주선 지하 통과를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강남한양수자인 피해 예상



국가철도공단은 수서~광주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을 개설함에 있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완충지대 10m를 침범하고 다시 추가 완충지대 10m 침범과 건축물경계6m. 합계 약26m를 침범한다.

이는 7개동140세대가 이주하여야 하면 1,304세대(자산가치 2조5000억원) 피해를 받는다.

다) 토지이용계획서. 공공주택법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를 근거하여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지역은 터널공사시 강남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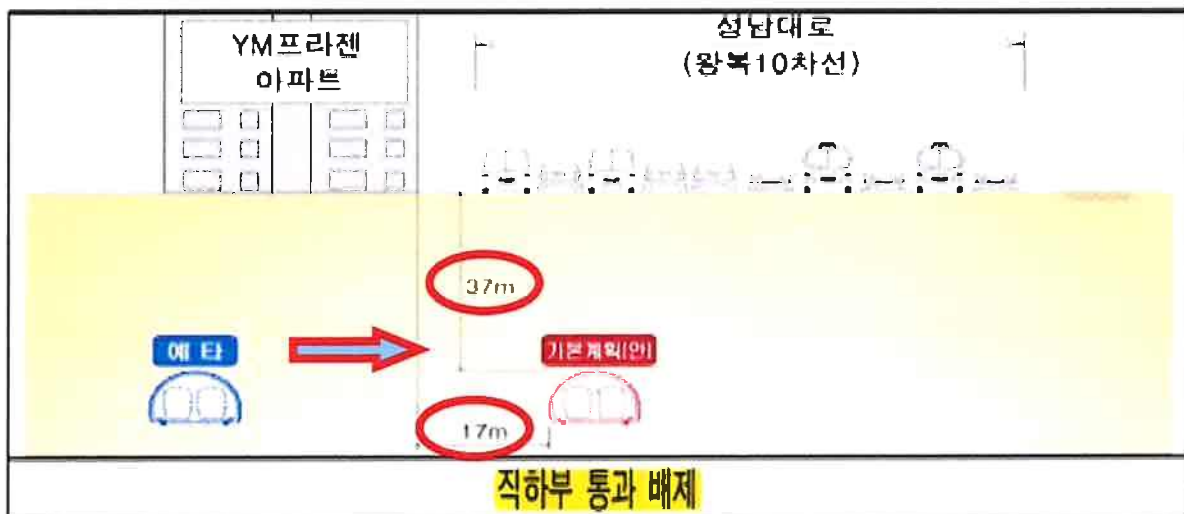
철도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법에 의거 의제사항은 강남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할사항으로 법리오해를 하여 강남한양수자인 아파트 주민과 협의 없이 승인시는 직권남용이다. 강남구청장이 협의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미조치시 직권유기이다.

라) 예비타당성 조사서에는 모란~삼동에 위치한 YM프라젠아파트 직하부 노선이였다.

그런데 전략영향평가 시 모란~삼동구간 YM프라젠 아파트등 주거 상가 밀집지역 직하부통과로 인한 소음·진동 민원발생예상으로 우회노선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III-7] YM프라젠 아파트 인근 통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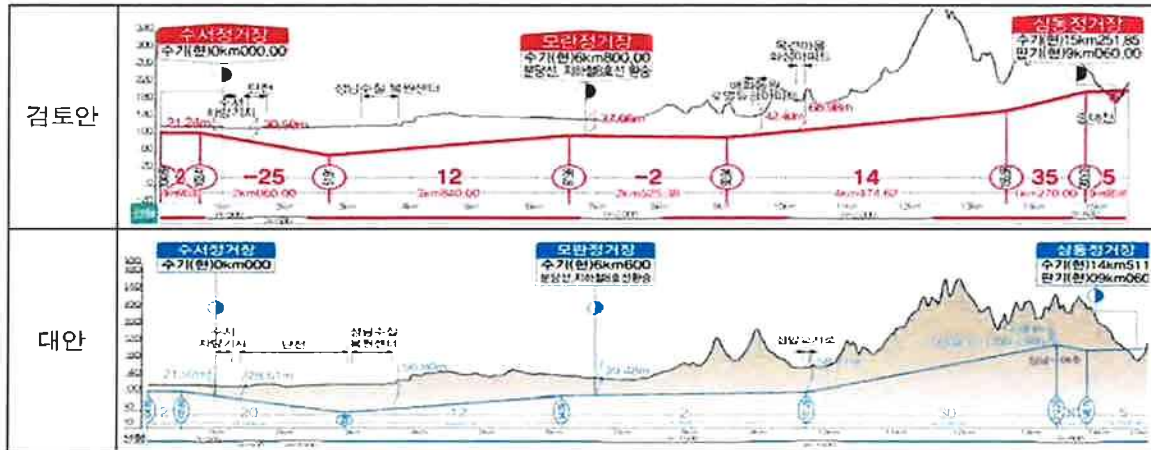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철도건설과-1412)」, 2022. 4. 12.

4. 민원사항

- 가. 강남구의회에서 『수서~광주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을 예비타당성조사의 탄천노선』으로 선정 결의한다.
- 나. 강남구청장은 수서-광주 복선 전철노선을 예비타당성 노선으로 변경하여 강남한양수자인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예비타당성에서 관련부처, 강남구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수서-탄천-모란노선을 선정한 사유, 사후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이행내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의견서 첨부, 토지이용계획서 및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내용, 모란-삼동 YM 프라젠 아파트와 형평성등의 노선 변경에 관련된 서류 등을 포함한다.)
- 다. 강남구청장은 자체감사를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수서주민대표를 선정한 과장, 주민대표가 협의내용 제출한 근거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시 강남구 의견서 미체출 사유 등을 구의회에 제출한다.
- 라. 강남구청 자체감사결과서, 『수서-광주 복선전철노선 예비타당성노선으로 협의내용 변경서』를 강남구 의회,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다.
- 마. 강남구청은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처럼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한다.
- 바. 위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구의회와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다.
- 사. 강남구의견서, 강남구의회 의견서를 2025년 5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III-6] 수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종단현황



<표 III-11> 대안별 노선개요 및 장단점

구분	검토안	대안	
노선 개요	탄천→성남수질복원센터→국도3호선→ 모란역→여수와 도촌지구 사이 통과→ 삼동역 종점부(접속)→광주역 * 분당선과 환승을 고려 모란역 신설 * 성남~여주선 삼동역 접속	탄천→성남수질복원센터→국도3호선→ 모란역→도촌지구 우회통과→ 삼동역 종점부(접속)→광주역 * 분당선과 환승을 고려 모란역 신설 * 성남~여주선 삼동역 접속	
노선 특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선 활용 노선으로 연장 최소화 · 광주시 도시계획 부합 · 곡선반경 확대 열차 운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대비 노선 연장 최소화→사업비 절감 · 지하철 8호선 횡단 배제 · 광주시 도시계획 부합 · 도촌지구 우회통과, 도로 및 성남~여주 등 의 복잡한 입체교차 배제 · 단선병렬 연장 축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지구와 도촌지구 사이(로얄듀크 아파트 지하 50m)로 통과 · 지하철 8호선 횡단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대비 평면선형에 따른 운행 주 행성 불리

첨부“2”

108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사업노선 검토

검토안은 사업계획에 제시된 노선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지하철3호선 및 분당선의 수서역과 근접해 있으며, 수서역 북서쪽에는 환승주차장, 남서쪽에는 대모산, 남쪽에는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수서역 주변으로 세곡2지구, 송파위례신도시, 동남권유통단지등이 개발 중에 있고, 문정지구와 제2양재대로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이 2016년 9월에 개통하여 영업 중이다. 본 사업노선의 종점부는 광주정거장으로 성남~여주선을 활용하여 중부내륙선, 원주~강릉, 중앙선으로 운행하는 노선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노선으로 설정하여 열차운행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검토안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노선계획으로, 탄천을 지나 지하철8호선을 횡단 후 여수지구와 도촌지구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하여 삼동정거장 직결운행 접속시 단선병렬 구간으로 계획되었다. 반면, 대안은 연구진이 제시한 노선으로, 대단위 주택밀집 지역을 우회하고, 삼동역 종점부 직결방안시 성장간선도로 횡단 회피 및 단선병렬 노선연장을 축소하는 노선이다.

<표 III-12> 대안노선별 비교·분석

구분	검토안	대안
시설 계획	- L=15.5km (신설) 수서-모란-삼동 15.5km (기존선 활용) 삼동-광주 3.7km -정거장 : 3개소 ·수서:3홈 11선(신설), 모란 :2홈 2선(환승) ·광주: 2홈 4선(환승)	- L=14.70km (신설) 수서-모란-삼동 14.7km (기존선 활용) 삼동-광주 3.7km -정거장 : 3개소 ·수서: 3홈 11선(신설),모란 : 2홈 2선(환승) ·광주: 2홈 4선(환승)
주요 경유지	탄천→성남수질복원센터→국도3호선→ 모란역→여수와 도촌지구 사이 통과→ 삼동역 종점부(접속)→광주역	탄천→성남수질복원센터→국도3호선→ 모란역→도촌지구 우회통과→ 삼동역 종점부(접속)→광주역
최급 기울기	33%	25%
곡선 반경	R=500→500→2,000→2,000→600	R=500→500→1,000→1,500→1,500→800